



자발적 친자관계 확인서를 입회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?

캘리포니아에서는 다음 기관에 소속된 공인 입회자가 자발적 친자관계 확인서의 입회를 할 수 있습니다:

- 병원(출생 시)
- 카운티 출생 및 사망 등록 담당 기관
- 법원 (가사법 지원 담당자)
- 카운티 아동양육비 지원 기관
- 카운티 복지 사무소
- 공증인*

캘리포니아 외 지역에서 확인서에 서명하는 경우, 공증인(notary public)*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지 공무원만이 입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. 법적 친자관계가 성립되기 전에, 해당 확인서에는 부모 양쪽이 모두 작성 및 서명하고, 서명이 적법하게 입회된 후 친자관계 기회 프로그램(Parentage Opportunity Program)에 제출해야 합니다.

***공증인은 서비스 제공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.**

법정에 가지 않고도 법적 친자관계를 확립할 수 있으며, 비용도 무료입니다!

자세한 내용은 다음을
방문하십시오
CalParentage.org

문의하기
AskPOP@dcss.ca.gov
916.464.1982

서비스 이용 시간
월요일 - 금요일: 오전 8시 - 오후 5시
토요일 - 일요일: 휴무